

Q&A

먹는물관리법

◆ 먹는샘물 수입신고시 색도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Q 먹는샘물 수입신고시 제출한 구비서류중 원수 수질검사성적서에 색도(8도)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불합격 제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및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A 먹는물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제5호 및 별지 제11호서식「먹는샘물 수입신고서」규정에 따라 먹는샘물의 원수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제품은 원수중에서 색도가 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수입신고 수리가 곤란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별표6의3), 행정처분 기준-2-나(9)의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함.

근거조문 먹는물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 상수도배관 노후로 인한 녹물방지를 위하여 방청제 투입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

Q 아파트내 상수도배관 노후로 인한 녹물방지를 위하여 인산염을 원료로 한 방청제를 투입할 경우, 방청제를 투여한 식수를 장기간 음용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아파트의 급수관에 디스펜서를 설치하여 방청제를 투입시 타당성 여부

A 방청제는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기기준(환경부고시 제 1997-8호, '97.2.6)”으로 정한 제제로서 사용기준은 급수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 농도로 10mg/L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농도 이하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성은 없음.

그리고, 방청제 투여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정농도(10mg/L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투여방법으로서 투입기구에서 별도의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 할 것임.

근거조문 먹는물관리법 제29조

수도법

◆ 음용수배관 자재관련

Q 아파트 급탕배관을 전부 교체하지 않고 기계실 내 급탕배관을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 재료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기존 배관과 같은 재료로 해야 되는지 여부

A 수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용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받은 제품, 수도용 단체표준 인증표시제품 또는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수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5. 27 환경부 고시 제1999-76호로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은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급탕배관이 급탕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도법령에 의한 수도용 자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급수배관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압의 저하, 진공발생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수질이 나쁜 물이 역류될 수도 있으므로 백강관 즉,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으로 교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도용으로 적합한 다른 관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임.

근거조문 수도법 제13조

◆ 전용상수도 설치 범위

Q 도시계획구역내 아파트에서 전용상수도 설치가 가능한지?

A 수도법 제3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상수도는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요양소 기타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사항이 수도법 제3조 제12호에 해당되고 동시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설치가 가능할 것임

근거조문 수도법 제3조 및 제36조

◆ 절수설비 적용에 관한사항

Q 수도법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적용시점과 대상건축물은?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은 어떤 것인지?

A 수도법('98.3.1시행)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2규정에 의해 건축주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경우에 '99.12.31까지는 절수효과가 있는大便기를, 2001년 1.1이후에는 대·소변기, 샤

워헤드, 수도꼭지(주방용, 세면용)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적용

시점은 건축물 준공시점이 아니라 건축허가(주택사업 승인)시점으로 함

수도법 제65조에 의거 동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근거조문 수도법 제11조의2, 제65조

◆ 절수형 대·소변기의 기준은?

Q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2 제2호 규정에 대하여

- 절수형大便기의 1회 사용수량은 급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해야 하는지?
- 절수형大便기·소변기는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인지?
- 절수형 소변기의 1회 사용수량을 4l 이하로 정한 이유는?
- 절수형大便기·소변기는 대·소변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A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2 제2호 규정에 의한 절수형大便기는 급수여부와 상관없이 1회 사용수량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공급 수압에 대한 제한은 없음

절수형大便기·소변기는 변기와 부속품이 합쳐진 제품을 말하며, 절수형 소변기의 1회 사용량은 미국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세정에 필요한 최대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것임

절수형大便기·소변기는 대·소변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형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

근거조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절수형 양변기는 대변용 사용수량이 6리터면, 소변용이 3리터 이상 남아야 하는지?**

Q 아파트 양변기 설치시 대변용량이 6리터로 개선한 절수형변기를 사용하여도 소변시에는 3리터이상이 더 남도록 해야 하는지?

A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2 규정에 의해 2000. 1. 1부터는 절수형 대변기 및 소변기의 1회 사용수량을 9리터와 4리터로 그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양변기가 절수형 대변기 및 소변기의 1회 사용수량 기준에 적합하면 절수형 변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근거조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하수도법

◆ **부대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관련**

Q 당초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총연면적중 음식점의 연면적이 400㎡이상으로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이었으나, 음식점 연면적을 400㎡미만으로 용도변경하여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이 아닐 경우 원인자 부담금 부담대상 여부 목욕시설의 부대시설인 휴게실, 수면실과 자동차 관련시설의 사무실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A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오수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오수정화시설(또는 정화조) 설치대상이 아니라면 원인자부담금 부담대상이 아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건물 기타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사전조사·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개의 건축물에 대해 환경부고시 제1997-85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를 적용하되 상기의 표에 없는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용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바, 사무실, 식품접객업 용도가 아닌 휴게실의 오수발생량은 15 l/m²를 적용하고 목욕장(목욕장내의 휴게실, 수면실, 탈의실 포함)은 60 l/m²를 적용

근거조문 하수도법 제32조

◆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관련**

Q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수처리(예정)구역외 지역에서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설치 여부

도시계획구역외 준농림지역에서 공공주택 시행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절차

A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하수도법 제5조의2 및 동법 제6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업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수처리구역은 동법 제9조에 의해 사용이 공고될 때 비로소 지정되는 것이므로 하수처리구역외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한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에 이루어질 수 없음

근거조문 하수도법 제5조의2 및 제9조

◆ **수변구역내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질의**

Q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수를 유입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별도의

인가절차없이 동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변경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A 공공하수도 관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용량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하수처리구역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하수처리구역의 편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처리시설용량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결정함

근거조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담대상 여부**

Q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후 신축하는 건축물에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담대상 여부

A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므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기 설치하였다면 원인자부담금 부담대상이 아님

다만, 합류식지역에서 오수정화시설 설치면제후 정화조를 설치하였다면 원인자부담금은 오수정화시설 설치비에서 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근거조문 하수도법 제32조

◆ **하수도사용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Q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체 고도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방류할 경우 및 최종 배출수를 인공연못에 일정기간 체류, 자연정화후 하천으로 방류할 경우에도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최종배출수를 재이용할 경우 감소된 양만큼 하수도사용료 감면 여부

처리된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한 기준은

A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므로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더라도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한다면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임

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므로 하수를 재이용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양이 감소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을 것임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개시된 배수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동 배수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사용 개시되었다면 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되며, 참고로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상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배출하는 사업장의 배출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할 예정임

근거조문 하수도법 제21조, 제24조

◆ 하수도사용료 납부

Q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공공하수도가 동 사업장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함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후 해양에 직접 배출하고 있는 경우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A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는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처리후 직접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동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님. 그러나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동 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가 설치된 이후부터는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대상임

근거조문 하수도법 제21조

◆ 하수도사용료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Q 하수처리구역내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오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후 하천에 방류할 경우,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A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므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님

다만,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내 토지소유자 등은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오수

정화시설에서 처리된 하수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질의의 지역을 배수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함

근거조문 하수도법 제21조

◆ 하수종말처리장구역에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Q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인가를 득하지 못한 오수처리시설이(4,500m³/일) 있을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일정구역에서 발생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지?

A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의거한 하수처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하수는 원칙적으로 동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어야 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의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9조 및 제9조의2에 규정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바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할 것임

근거조문 하수도법 제2조제4호

※ 이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질의/회신란의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하수도법에 있는 것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발췌하여 실은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水道**